

# 2025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사업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「2025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2. 27.

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

## 1. 사업목적

- 제주의 문화원형을 현대사회에 맞는 이종산업과 융합한 상품제작을 지원하여,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제주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기여
- 제주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, 제주문화원형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

## 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사업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(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) ~ 2025. 10. 15.
- 사업대상 : 제주의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현대산업, 기술 등을 융합한 유형(有形)의 문화콘텐츠 상품을 협약기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개인 창작자
- 지원내용 : 제주문화원형 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, 연구용역비, 전문가 자문료 등 제작비 지원
- 지원규모 : 총 76,000천원(총 4개 과제, 과제별 19,000천원)  
※ 과제신청서 기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 조정 될 수 있음
- 사업범위 : 제주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한 유형(有形)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<sup>1</sup> 제작 및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

### 1. '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' 정의

- IT, SW,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서로 융화되고 결합되면서 기존의 산출물과 견주어 현저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여 발굴한 유형의 문화상품<sup>2</sup> 제작 지원

## 2. '유형의 문화상품' 정의

- 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 제2조 2호에 따른 '문화상품' 중 유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

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문화상품"이란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(이하 "문화적 요소"라 한다)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※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은 '융복합' 사례로 보지 않음

(예) 수공예작품, 라이선스 제품 제작, 티셔츠 실사 출력 등 지원 불가

## ○ 이전년도 지원과제 예시

### (예) 23년도 지원과제

연번	과제명	제주문화원형
1	제주 해녀의 문화와 가치를 접할 수 있는 보드게임<숨비소리>	제주해녀
2	제주자연의 음악이 담긴 엽서북 및 연동웹 제작	제주의 자연·문화적 소리
3	제주 돌하르방을 소재로 한 창작 그림책과 음악콘텐츠	돌하르방
4	비밀의 바람숲 캐릭터 IP를 활용한 커피박 AR 체험키트	제주 꽃자왕 동·식물
5	제주 신화와 캐릭터 IP를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 제작	신화, 오름, 동·식물
6	세화 바닷가에서 즐기는 실감형 모바일 해녀 문화 체험게임	해녀, 제주남방큰돌고래

### (예) 24년도 지원과제

연번	과제명	제주문화원형
1	제주 디지털로 살아나는 문화유산 실감미디어 융복합 교육 솔루션 개발	문화유산(금봉사, 등명대 등)
2	제주 멸종위기 야생생물 테마 오토마타 북	오름, 신화
3	서귀포 바닷가에서 즐기는 메타버스형 제주문화 체험게임 개발	한라산, 오름, 외돌개
4	제주신화와 함께하는 율놀이	신화

○ 지원자격 : <문화산업진흥 기본법><sup>1</sup>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내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개인 창작자

## 1. 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
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
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 
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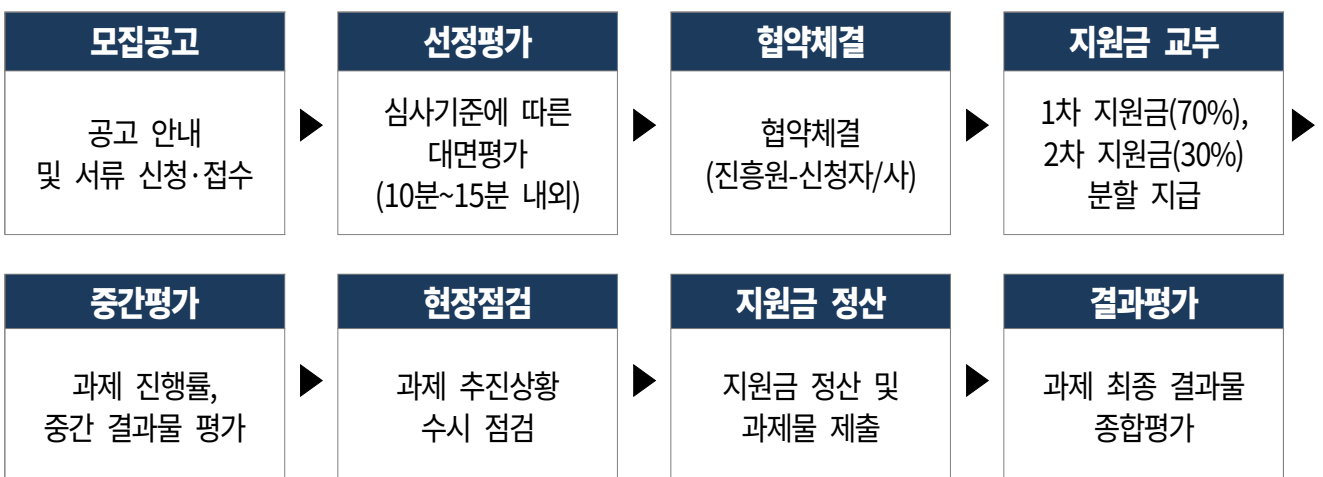
○ 사업비 사용 용도 : 지원과제에 대한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 \* 별첨 <사업비 집행기준> 참고

목	세목	사용 용도
재료비	일반재료비	· 제품,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사업용, 시험연구, 실험, 실습 등)
연구개발비	연구용역비	·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·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, 컨설팅비 · 회계정산 수수료(예산 책정 필수)
	회의비	· 평가, 회의 등에 필요한 다과, 식사비
여비	국내여비	· 상품 제작과 관련된 국내 여비

※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지원금 편성에서 제외

※ 이외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편성 바람

### ○ 운영절차



※ 중간 및 결과평가는 대면 평가로 예정되어 있으나,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# 3.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5. 2. 27.(목) ~ 3. 14.(금) (16일간)
- 접수기간 : 2025. 3. 10.(월) ~ 3. 14.(금) 14:00까지  
 ※ 접수 마감일(3월 14일 금요일 14:00)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click0925@ofjeju.kr)

※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(☎ 064-735-0622)  
 ※ 제출서류(양식)는 진흥원 누리집(<https://ofjeju.kr>) [공지사항] 또는 [사업신청] 참조

#### ○ 제출서류

붙임	제출서류	유의사항	제출형식
1	과제신청서	· 서명 또는 날인 필수	[붙임 1~5], [붙임 6~12] 2개의 PDF로 변환 후 하나의 압축파일(ZIP)로 제출  압축파일명과 메일 제목은 '신청자(사)명_과제명'으로 제출
2	과제계획서	·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	
3	수행자(사) 소개서	·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	
4	사업비 편성	·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하여 작성	
5	위탁사업 계획서	·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	
6	참여제한 자가진단서	· 서명 또는 날인 필수	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· 과제 참여인력 필수 기재	
8	평가위원 추천표	· 무작위로 5개의 번호를 지정하여 체크	
9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· 법인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·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1부 · 창작자: 주민등록등본 1부	
10	국세 완납증명서	·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	
11	지방세 완납증명서		
12	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(해당자에 한함)	· 주요 계약서,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 시) · 신청자(사) 참여인력 추가 실적 · 참고자료(이미지, 파일, 인쇄물 등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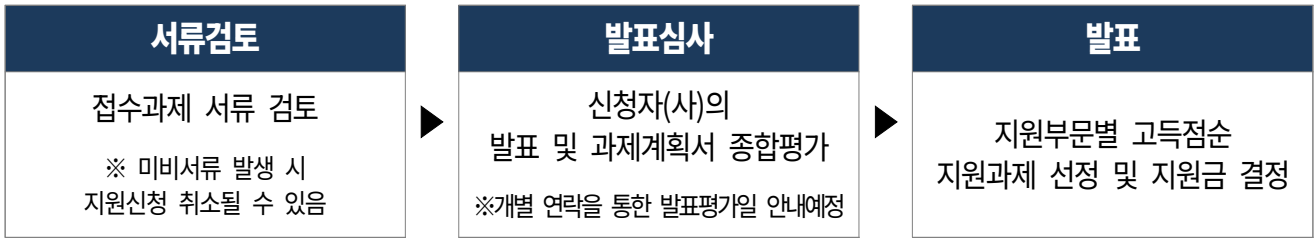
※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인 또는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 
 ※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(사)에 있음  
 ※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
 ※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(사)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#### ○ 접수 및 문의

담당자	메일주소	문의전화
콘텐츠육성팀 고경욱 주임연구원	click0925@ofjeju.kr	064-735-0622

#### 4. 평가 및 선정

- 평가일정 : 2025년 3 ~ 4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평가방법 (※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)



#### ○ 평가위원회 구성방법

가.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15인의 후보자를 선정함  
 나.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무기명으로 번호만 표시된 15개의 번호 중  
 과제신청자가 무작위로 5개의 번호를 선택함 [붙임8. 평가위원 추천표]  
 다. 집계 후,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5인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

※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, 앞 순번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

#### ○ 평가기준 : 최고, 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합산점수로 평가점수를 산정

평가기준	평가항목	배 점
기획력	• 기획된 과제의 독창성과 참신성 • 기존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활용 가치 • 타 산업 연계 계획의 우수성 및 시장 흥행성	30점
타당성	• 본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력 • 성과 목표의 명확성	20점
수행역량	•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•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및 기술력, 인프라 보유 정도	20점
지역 기여도	• 제주문화원형의 콘텐츠 상징성 •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	20점
기대성과	•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대중들의 소비·향유 정도 • 목표시장·타겟설정·마케팅 및 유통·배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	10점
<b>합 계</b>		<b>100점</b>
우대가점	•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	2점
	• 제주콘텐츠진흥원 내 입주기업인 경우	2점

※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우대가점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

※ 선정과제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과제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

## 5. 지원금 지급 · 집행 ·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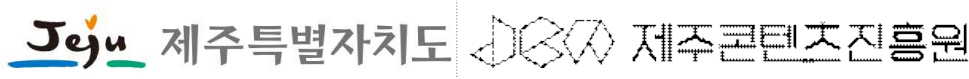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자(사)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방법,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함</li> <li>· 지원금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차 :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(70%) 지급</li> <li>- 2차 : 중간평가 통과 시 2차 지원금(30%)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
지원금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자(사)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(현금인출 집행 방식 금지)</li> </ul> </li> <li>· 집행기간은 협약서상 수행기간(협약체결일 ~ 2025. 10. 15.)으로 하며 지출항목,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</li> </ul>
지원금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자(사)는 협약종료일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고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, 회계검증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· 정산범위 : 총 사업비(지원금)</li> <li>· 제출서류 : 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, 집행 증빙자료, 회계검증보고서 등</li> </ul>

## 6. 추진일정

구분	일정	주요내용
공고 및 접수	2025. 2. 27.(목) ~ 3. 14.(금) 14:00까지	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 및 사업신청
발표평가 및 선정	2025. 3월 말	발표평가를 통한 최종과제 선정
과제계획서 수정	2025. 3월 말	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및 과제계획서 조정
협약체결	2025. 4월 초	수정과제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
1차 지원금 지급	2025. 4월 초	1차 지원금(70%) 교부
과제수행 모니터링	협약체결일 ~ 2025. 10월	과제 추진상황 수시 점검
중간점검 실시	2025. 7월 중	과제 진행률, 중간 결과물 평가
2차 지원금 지급	2025. 7~8월 중	중간점검 통과시 2차 지원금(30%) 교부
사업비 집행 마감	2025. 10. 15.(수)	상품 제작 완료 및 정산 완료
결과보고서 제출 마감	2025. 10. 30.(목)	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결과평가 실시	2025. 11월 중	제작과제물 시연회 및 결과평가

※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

## 7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구분	내용
과제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과평가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<b>최종결과물(상품)을 산출</b>할 수 있는 기업(창작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과평가 당일까지 산출물 당 각 2점씩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산출물(각 2점씩)의 소유권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양도함</li> </ul> </li> <li>· 최종결과물(상품)은 <b>국내외 상업적으로 대량생산하여 유통</b>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함</li> <li>· 이미 상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혹은 개발완료가 된 상품은 지원불가</li> <li>· 신청한 과제는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거나 지역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동일한 소재가 아니어야 함 (지원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함)</li> <li>· 단순 라이선싱이나 이미지 프린팅 등 단순 제작 또한 지원불가</li> <li>· 협약종료일까지 과제물에 대한 관련 <b>지적재산권을 확보</b>한 상태여야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선정 이후에도 협약취소 및 지원금 환수, 민·형사상 법적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</li> </ul>
지원금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협약기간 종료일(2025. 10. 15.)까지 상품 제작 완료 및 집행을 완료하고 15일 이내 결과보고·정산보고 및 공인회계사를 통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
사업비 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종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함</li> <li>·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하며,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은 지출 불가</li> <li>·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이 불가함</li> </ul>
보험증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정 시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이며,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</li> <li>- 보험금액 : 지원금 100%</li> <li>- 보험기간 : 협약기간 + 90일(협약체결일 ~ 2026. 1. 15.)</li> </ul> </li> </ul>
과제물 사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정과제는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(이용허락권)은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가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허락권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변경, 방송·전시·교육·광고·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과 타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(전시, 녹화, 도록 수록·배포, 교과서 게재 등)</li> </ul> </li> </ul>
제작지원 고지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로고를 통해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</li> <li>- 이 상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.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의 평가기준 미달 시,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</li> <li>· 과제 미완성, 기타 신청자(사)의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</li> <li>- 환수 절차 미 이행시 보증보험증권 청구</li> </ul>
참여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</li> <li>·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</li> <li>· 신청자(사)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</li> <li>-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
## 8. 기타사항

### ○ 결과물 귀속

가. 제작된 상품의 지적재산권은 신청자(사)에 귀속되나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

- 상품에 대한 소개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무료사용
-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활용 등

### ○ 유의사항

가.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(사)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
나. 신청자(사)는 지원금 지급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
다. 진흥원은 신청자(사)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신청자(사)는 성실히 응해야 함

라.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(이자 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사업비를 제작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신청자(사)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중간/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가 미흡할 경우
- 협약기간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과제수행계획서 등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
- 신청자(사)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 상품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
※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(사)가 해결한 후 상품 판매 및 유통에 사용해야 함

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

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(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)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- 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(사)의 책임으로 봄
- 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